

#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8.05.31.)

## 프랭클린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펀드 코드: AH816]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프랭클린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li>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li>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li>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li><li>투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li><li>집합투자기구가 법에서 정한 소규모 펀드(설정 1년 후 50억미만)인 경우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ul>
	<b>※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

집합투자기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이 투자신탁은 SICAV FTIF Franklin Biotechnology Discovery Fund 에 주로 투자하는 『프랭클린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li><li>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li></ul>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02-3774-0600)		
모집(판매) 기간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효력발생일	2018년 06월 18일	준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및 집합투자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franklintempleton.co.kr">http://www.franklintempleton.co.kr</a> ) 참고		

종류(Class)	A	A-e	C	C-e	C-P	S	P
가입자격	가입 제한 없으며,	온라인을 통해,	가입 제한 없으	온라인을 통해,	소득세법 제20조	집합투자증권에	근로자퇴직급여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 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가 징구되는 수 익증권에 가입하 고자 하는 투자 자	며, 선취판매수 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가 징구되지 않 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 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한정하여 투자중 개업 인가를 받 은 회사(겸영금 융투자업자는 제 외)가 개설한 온 라인 판매시스템 에 회원으로 가 입한 투자자 전 용으로서 후취판 매수수료가 부과 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에 한하여 발행 되며, 판매수수 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 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 기준)	납입금액의 1.0% 이내	납입금액의 0.5% 이내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Class S에 한하여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	0.7000	0.3500	1.0000	0.5000	0.8000	0.2500	0.7000
보수 (연 순자산 총액의 )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 보수 : 0.100, 수탁회사 보수 : 0.03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0.010						
	기타 <sup>주1)</sup>	0.0029	0.0028	0.0029	0.0028	0.0029	0.0028	0.0029
	총보수·비용	0.8429	0.4928	1.1429	0.6428	0.9429	0.3928	0.8429
	합성총보수·비 용 비율(피투자펀 드의 총보수비용 (0.97%)포함)	1.8185	1.4685	2.1185	1.6185	1.9185	1.3684	1.8185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8년 5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 전체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치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2) 총 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 모두자신탁 및 모두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모두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FTIF Franklin Biotechnology Discovery Fund I share의 총 보수·비용비율을 약 연 0.96%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여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2018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4) 동 집합투자기구의 다른 종류 수익증권(C-I, C-F, S-P, C-W)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17시 이전) 제3영업일 기준가 매입 (17시 경과 후) 제4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17시 이전) 제4영업일 기준가 제9영업일 지급 (17시 경과 후) 제5영업일 기준가 제10영업일 지급
기준가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시. 다만, 최초설정일[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 - 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frankltempleton.co.kr">http://www.frankltempleton.co.kr</a> ), 판매회사, 한국금융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전략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6호가목에 의거하여 **SICAV FTIF Franklin Biotechnology Discovery Fund**에 주로 투자하는 「프랭클린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FTIF Franklin Biotechnology Discovery Fund는 일반투자자를 판매대상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5월 4일 국내에 등록되었으며 미국 및 기타 국가에 소재한 생명공학 기업과 연구 회사(중소기업들 포함)의 지분증권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며, 전세계 발행인의 채무증권에도 부수적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 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전략

##### 가. 기본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일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외에 투자신탁 재산 전부를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은 미국 달러로 표시되는 FTIF Franklin Biotechnology Discovery Fund에 주로 투자할 계획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되며, 이러한 수익은 원-미국 달러의 환율변동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상황,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94% NASDAQ Biotechnology Index + 6% Call Index

\* NASDAQ Biotechnology Index : 미국 바이오테크놀러지 시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인덱스로 산업분류기준에 따라 생명 공학이나 제약기업으로 분류되어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증권을

## 포함함

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모투자신탁명		주요투자대상 및 전략
프랭클린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재간접형)	주요투자대상	FTIF 프랭클린 바이오테크놀러지 디스커버리 펀드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
	투자목적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 * 비교지수: 94% NASDAQ Biotechnology Index + 6% Call Index

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FTIF 프랭클린 바이오테크놀러지 디스커버리 펀드)의 운용전략

본 펀드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소재한 생명 공학 기업과 연구 회사(중소기업들 포함)의 지분증권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며, 전세계 발행인의 채무증권에도 부수적으로 투자합니다.

본 펀드는 해당 기업의 가장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생명 공학 활동을 통해서 수익의 50% 이상을 창출하거나, 순자산의 50% 이상을 생명 공학 활동에 할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명 공학 활동이란 다양한 생명 공학 또는 생명 의료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개발, 제조, 유통 등을 의미합니다. 유전자학, 유전 공학, 유전자 치료 등과 연계된 기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제약, 농업 등의 부문에서 생명 공학 기술을 응용하고 개발하는 기업 역시 포함됩니다.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등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미등급 증권을 매입합니다. 투자등급 채무증권은 스탠다드 & 푸어스(Standard & Poors)나 무디스(Moody's) 등 독립 신용평가기관의 상위 4 등급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본 펀드는 미국 이외의 단일 국가의 증권보다 미국 증권에 더 많은 순자산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펀드 순자산의 50% 이상이 미국 외 지역의 증권에 투자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본 펀드가 투자하는 국가의 증권시장이나 경제가 과도한 변동성을 겪고 있거나 침체 국면이 지속되거나 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방어적인 현금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 3.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8.05.31.현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 수	운용자산 규모(원)		

백상훈	1972년	책임운용전문인력	35개	9,315 억	당사 캠플라이언스팀 (1999-2000) 당사 채권운용팀 (2000-2008) 당사 FTMIS 팀 (2008-2009.4) 당사 채권운용팀 (2009.5-현재)	-
김강호	1983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19개	4,658 억	현대증권 장외파생 구조화상품팀(2009.12-2012.05) 당사 채권운용팀(2012.06-현재)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없음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운용전문인력	운용 기간
김동일	2013.05.31 ~ 2016.05.31
김강호	2016.06.01 부터

#### 다. FTIF Franklin Biotechnology Discovery Fund 운용전문인력

펀드명	성명	나이	직위	주요경력 및 이력	현재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2018년 4월 30일 기준)		책임운용 전문인력 여부
					펀드수	규모 (백만)	
프랭클린 바이오테크놀러지 디스커버리 펀드	Evan McCulloch	48	부회장, 리서치 애널리스트, 포트폴리오 매니저	- 1992년 프랭클린템플턴에 입사하여 2000년 11월부터 프랭클린 바이오테크놀러지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했음	2	\$3,672	Y

주1) 상기인이 FTIF Franklin Biotechnology Discovery Fund 의 운용을 총괄하며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됩니다.

#### 4.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세전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7.06.01~ 2018.05.31	2016.06.01~ 2017.05.31	2015.06.01~ 2016.05.31	2014.06.01~ 2015.05.31	2013.06.01~ 2014.05.31
프랭클린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2.50	5.25	-23.89	51.97	32.62
비교지수	13.23	2.40	-21.95	49.22	31.86
프랭클린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Class A	11.56	4.38	-24.55	50.77	31.55
비교지수	13.23	2.40	-21.95	49.22	31.86

주1) 비교지수 : 94% NASDAQ Biotechnology Index + 6% Call Index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사항은 대표종류 수익률만 기재하였으며, 나머지 종류에 대한 수익률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 1. 주요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투 자 위 험 의 주 요 내 용
원본 손실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li> </ul>
시장위험 및 개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해외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li> <li>✓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li> <li>✓ 특히 동 투자신탁에서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예정인 해외 채권은 국외 유가증권이므로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는 국제 경제 전망, 환율 변동 등 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동될 것입니다.</li> </ul>
환율 변동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는 해외 유가증권에 주로 투자하므로 관련 통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됩니다.</li> <li>✓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달러화로 환전된 자금 및 달러화로 표시되는 투자금액이 원-미국 달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파생상품에 대한 해지목적의 거래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해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환헤지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li> </ul>
섹터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특정 섹터나 업종들의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해당 섹터 혹은 업종의 특정 위험에 노출됩니다. 여러 섹터 혹은 업종에 분산투자할 경우에 섹터 위험이 감소하지만, 주로 한 섹터 혹은 업종에 집중투자할 경우 섹터 위험이 극대화 됩니다.</li> <li>✓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신약과 의약품의 특허권, 상품에 대한 법적책임, 정부의 규제적인 요구사항 및 규제적인 승인과 같은 위험과 관련 있는 하나의 섹터에 집중하여 투자하는 섹터펀드입니다. 바이오테크놀러지 기업은 종종 규모가 작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신생기업으로, 특히 경제상황의 변화에 민감할 수 있으며, 크고 설립된지 오래된 기업에 비해 확실한 성장에 대한 전망이 낮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심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환율변동과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포함한 특별한 위험을 수반한 외국기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li> </ul>
유동성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특성 상 환매기간이 타 투자신탁보다 길게 소요됩니다. 환매신청일로부터 판매회사의 영업일 기준으로 9 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신청한 경우에는 10 영업일) 후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li> </ul>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li> </ul>
해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li> </ul>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li> </ul>

\*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상세 투자위험은 반드시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기준통화는 미국 달러이며, 피투자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금액이 원-미국 달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투자운용전문인력의 판단에 따라 모투자신탁 수준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해지 목적의 거래(목표해지비율: 100% 추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해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환해지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펀드가치변동이나 펀드편출입으로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해징 거래도 이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나 목적하는 바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환해지]

펀드의 매수시점보다 매도시점에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환해지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펀드의 매수시점보다 매도시점에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환해지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 1. 과세

가.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나. 연금저축계좌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	-------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연금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 (지방소득세 포함)</li> <li>-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li> </ul> <p>(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금액부터 적용)</p>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적용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P 클래스(퇴직연금)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2015년 1월 1일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franklintempleton.co.kr](http://www.franklintempleton.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franklintempleton.co.kr](http://www.franklintempleton.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franklintempleton.co.kr](http://www.franklintempleton.co.kr))